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년 12월 pp.421~459
한국세무학회

개정 합병세제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 연구*

정래용**

<요 약>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으로 인한 기업의 권리훼손 문제 및 개선방안을 개정된 합병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조정 위배시 0보다 큰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과 모순된다. 이는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과세이연에 치중한 나머지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기업회계와의 차이조정을 무시한데 기인한다.

둘째, 적격합병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익의 경우 법인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일시에 익금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이는 5년간 분할 익금산입되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비해 더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 자체의 논리에 집착한데 기인한다.

셋째,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사실상 강제 결산조정은 비외부감사대상법인과 의 형평성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기업회계에 의해 법인세회계가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작은 경우로서 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바, 이는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제도 도입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제어> 합병세제, 충돌성,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 합병매수손익, 감가상각비

* 본 연구는 200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ryjung@hongik.ac.kr, 041-860-2528

I. 서 론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목적적합한 재무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정부재정의 조달을 위한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하므로 회계처리의 차이가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투명성 저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양 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해소시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세무조정제도에 의하면 기업회계의 요구와 법인세법의 요구가 상이할 경우 기업들은 기업회계의 요구에 따라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양자의 차이를 해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기업회계의 요구와 법인세법의 요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차이를 해소할 법인세법상의 조정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양자간의 충돌로 인해 기업의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되는 법인세법분야가 있다.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이나 합병매수손익의 세무조정 또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법인의 감가상각이 그 예이다.¹⁾ 즉 적격합병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세무조정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들 간에 충돌성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은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손익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 또는 분할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손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강제결산조정을 해야 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비외부감사대상법인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직간접적으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에 기인한다.

그 동안 합병세제는 양 회계의 차이가 세무조정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영역이었다. 이는 주로 합병시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승계기준으로 장부가액법과 취득가액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게 했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2)에도 원인이 있었다.

1) 기타 합병세제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은바,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박정우·정래용, 2011.3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43, 544면).

①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취득(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의 경우 기업회계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가 법인세법과 정반대가 될 것이나 법인세법에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완전자회사가 아닌 지배·종속간 합병의 경우 포함주식으로 인해 비적격합병이 된다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업회계는 장부가액법, 법인세법은 취득가액법이 될 것이나 법인세법에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 이미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된다고 보는 기업회계의 장부가액법 회계처리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인세법도 장부가액법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 법인세법은 100% 완전자회사의 경우만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여 장부가액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법인세법의 개정(2010.7.1시행)에 의해 합병시 자산의 승계기준으로 적격합병시는 장부가액법으로, 비적격합병시는 취득가액법으로 명확해졌다.³⁾ 그리고 종전의 합병평가차익(분할의 경우는 분할평가차익)을 대체한 자산조정계정이라는 새로운 과세이연제도를 통해 양 회계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신설된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등과 관련하여 양 회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충돌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충돌성 문제를 개정된 합병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행 법인세법상 허용되고 있지 않은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된 합병세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의 경우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 과정에서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할도 합병과 원칙이 동일한바,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합병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관계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신찬수 1994, 이우택 1997, 박정우 등 2001, 손기원 등 2001, 이만우 등 2003, 정광은 2009), 합병이나 분할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의 문제제기(김길성 등 2003, 서광석 2009, 이준규 2009, 서광석 2010, 천승희 2010)는 그동안의 세법개정을 통해 해소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외국의 입법예나 외국의 연구논문의 인용이 미흡한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 합병세제의 구체적인 조항들의 독특성에 기인한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 문제의 적용측면에서 개정된 합병세제나 감가상각비 규정을 예시하여 구체적으로 취급한 선행연구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II. 개정 합병세제의 주요 내용 및 기업회계와의 관계

1. 개정 합병세제와 자산조정계정

개정 법인세법에 의하면 종전의 합병평가차익을 통한 과세이연제도가 자산조정계정의 계상

2)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에 계상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동 규정은 기업회계의 취득가액법과는 달리 법인세법상은 장부가액법 또는 취득가액법 적용을 선택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장부가액 승계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되었고(구 법인세법 제45조②) 합병차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그러나 시가승계의 경우는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었다(구 법인세법 제44조).

3) 그러나 적격합병이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 과세이연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합병법인이 자산의 승계가액을 장부가액법 또는 취득가액법 중 선택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적격합병이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에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면 합병법인은 장부가액법으로 회계처리 할 것이고 양도손익을 계상하기로 한다면 합병법인은 취득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을 통한 과세이연제도로 좀더 합리적으로 대체되었다. 두 방법 모두 과세이연금액이나 과세이연 시기가 동일하다. 그러나 신설된 자산조정계정은 법인세법에서 과세이연방법의 합리화를 의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후술하는 바대로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규정들 간에 충돌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조화에 대한 배려부족에 기인한다.

가.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적격합병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장부가액과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는 자산조정계정의 구체적인 세무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⁴⁾

나. 신설된 자산조정계정제도의 취지

(1) 자산승계기준의 일원화 및 과세이연제도의 합리화

2010.7.1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인 자산조정계정은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제도를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⁵⁾ 즉 합병에 따른 자산의 승계기준을 적격합병의 경우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비적격합병의 경우는 시가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이때 적격합병이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계산한 경우이거나 비적격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합병손익을 계산하고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손익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이연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적격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그리고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종전에는 적격합병이라 하더라도 청산소득(현행 양도손익) 또는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합병법인은 자산조정계정의 계상을 통해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매각 시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⁶⁾

4)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후술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5) 자산조정계정의 계상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은 다음 규정에도 원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① 적격인적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4①)
 ② 적격물적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④)
 ③ 적격현물출자(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2④)
 ④ 적격양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⑩)

6)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 기업합병제도를 원용하여 2009년말 세법개정시 새롭게 도

이에 따라 종전의 합병차익 계산 또는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였으며⁷⁾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예컨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시키는 등 처음부터 비적격합병이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이연을 배제하도록 했다.

(2) 합병평가차익의 대체 및 사후관리의 합리화

적격합병의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되 시가와 장부가액(세무상 가액)과의 차액인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 또는 손금(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작은 경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제84조의4①). 이는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합병법인 단계에서의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종전의 합병평가차익, 새로운 규정의 자산조정계정으로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과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익을 더한 금액)을 자산의 매각 시까지 과세이연 시키고자 함이다. 그리고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처음부터 비적격합병인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즉 종전에는 피합병법인 단계에서의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수단이 합병평가차익이었다면 새로운 규정에서는 자산조정계정으로 대체된 셈이며 합병당사법인에게 종전보다 유리한 과세이연혜택을 부여하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제도를 좀 더 합리화시킨 것이다.

다. 자산조정계정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아래에서는 자산조정계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의 사례를 예시한다.⁸⁾ 이때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은 후술하는 ‘개정 합병세제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과도 관련된다.

(1)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

A법인은 2011년 1월 1일 B법인을 적격합병요건을 구비하여 흡수합병하고 B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시가 250, 액면가액 40)을 지급하였다. B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입한 것이다(김진수·이준규, 2007,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Vol 130, 68면, 이준규, 2009.8, 『사실상 합병에 대한 적정과세방안』,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28권 제2호 267~262면)

7)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2008.12.28 구 법인세법 14조의5에서 구 법인세법 44조에 이전되어 신설되었고 2009.12.31 폐지되었다.

8) 박정우·정래용, 2011.3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606~609면

B법인 재무상태표

자 산			부채 및 자본	
자 산	150		부 채	50
(시 가	350)		자 본 금	60
			잉 여 금	40

이때 B법인은 세무처리상 양도손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ext{양도손익} = 100(\text{간주 순자산}) - 100(\text{세무상 순자산}) = 0$$

그리고 A법인은 기업회계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취득가액법).

(차) 자 산	350	(대) 부 채	50
		자 본 금	40
		주식발행초과금	210
		염가매수차익(수익)	50

피합병법인에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세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법인세법상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차) 자 산	150	(대) 부 채	50
		자 본 금	40
		주식발행초과금	60

이때 자산조정계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자산조정계정} = 300(\text{회계상 순자산}) - 100(\text{세무상 순자산}) = 200$$

그리고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⁹⁾

(손금산입) 자 산	200(△유보)*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150(기타)

9) 황남석, 이준규, 2010,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16권 제3호, 65~66쪽

* 기업회계상의 순자산이 세무상의 순자산보다 자산조정계정 200만큼 과대계상 되었기 때문이다. 동 유보 금액의 잔액은 사업의 폐지나 지배주주의 주식처분등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익금(유보)에 산입한다.

상기와 같이 세무조정하면 기업회계상 수익 50은 자동적으로 부인되게 된다. 그리고 △유보 200은 감가상각¹⁰⁾ 또는 자산의 양도시 익금산입(유보)으로 반대조정 된다. 만일 상기 자산조정 계정 200중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100이고 내용연수가 5년(잔존가액 없음)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익금산입) 감가상각비	20(유보)
--------------	--------

(2)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작은 경우

A법인은 B법인을 적격합병요건을 구비하여 흡수합병하고 B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시가 150, 액면가액 40)을 지급하였다. B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B법인 재무상태표						
자 산			부채 및 자본			
자	산	150	부	채	50	
(시	가	100)	자	본	금	60
			잉	여	금	40

이때 B법인은 세무처리상 양도손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ext{양도손익} = 100(\text{간주 순자산}) - 100(\text{세무상 순자산}) = 0$$

그리고 A법인은 기업회계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취득가액법).

(차) 자	산	100	(대) 부	채	50	
영	업	권	자	본	금	40
			주식발행	초과금	110	

피합병법인에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세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합병법인의 법인세법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0) 이는 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며 결국 신고조정하는 결과가 된다.

(차) 자 산	150	(대) 부 채	50
		자 본 금	40
		주식발행초과금	60

이때 자산조정계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자산조정계정} = 50(\text{회계상 순자산}) - 100(\text{세무상 순자산}) = \triangle 50$$

그리고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자 산	50(유보)*
(손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50(기타)

* 기업회계상의 순자산이 세무상의 순자산보다 자산조정계정 50만큼 과소계상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유보 50은 감가상각¹¹⁾ 또는 자산의 양도시 손금산입($\triangle$ 유보)으로 반대조정 된다.

만일 상기 자산조정계정 50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이 25이며 내용연수가 5년(잔존가액 없음)이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5($\triangle$ 유보)
--------------	--------------------

그리고 상기 영업권은 자산성 여부에 불구하고 손상차손 인식의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2. 개정 합병세제와 합병매수손익

개정된 합병세제에 의하면 적격합병의 경우 과세이연을 통해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 단계에서 조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반면 비적격합병의 경우 이러한 과세혜택을 배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의 세무처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에도 기업회계상은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은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정 합병세제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¹²⁾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를 오도할 수 있는 여지가

11) 이는 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며 결국 신고조정 하는 결과가 된다.

12) 법인세법 제44조의2는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의 시가승계원칙과 합병매수손익에 대한 세무조정만을

있다. 예컨대 적격합병에 따른 기업회계상의 합병매수차익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익금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이는 5년동안 분할익금되는 비적격합병에 비해 불리하다. 이러한 문제는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 자체의 논리에 집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가. 자산의 승계원칙과 합병법인의 세무처리

적격합병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적격합병이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계산한 경우 포함)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즉 자산의 승계가액은 시가로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① 합병매수손익의 세무처리를 해야 하고(법인세법 제44조의2②③), ②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없으며(법인세법 제45조②, 법인세법 제44조의3②), ③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세무조정사항인 유보)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법인세법 제44조의2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나. 비적격합병과 합병매수손익 세무처리

(1) 합병매수차익의 분할익금산입

법인세법 제44조의2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¹³⁾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에서 제외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3①).

$$\text{합병매수차익}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의 월수}}{60\text{월}}$$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격합병시의 합병매수손익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분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13) 합병시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2) 합병매수차손의 분할손금산입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인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3 ②)에는 그 차액(합병매수차손¹⁴⁾)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44조의2③).¹⁵⁾ 따라서 영업권의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을 균등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합병매수손익 세무조정 사례

아래에서는 합병매수손익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합병매수손익의 세무조정 사례를 예시한다.¹⁶⁾

(1) 합병매수차익의 경우

A법인은 2011년 1월 1일 B법인을 비적격합병형태로 흡수합병하고 B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시가 250, 액면가액 40)을 지급하였다. B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B법인 재무상태표						
자 산			부채 및 자본			
자	산	150	부	채	50	
(시	가	350)	자	본	금	60
			잉	여	금	40

이때 B법인은 세무처리상 양도손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산입).

$$\text{양도차익} = 250(\text{양도가액}) - 100(\text{세무상 순자산}) = 150$$

14) 기업회계상 영업권이라 한다. 세무상은 영업권의 자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상각을 인정하지 않으며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권의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15) 합병시 급격한 조세부담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16) 박정우·정래용, 2011.3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595~598면

그리고 A법인은 기업회계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취득가액법).

(차) 자 산	350	(대) 부 채	50
		자 본 금	40
		주식발행초과금	210
		임가매수차익(수익)	50

합병매수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합병매수차익} = \text{순자산 시가}(300) - \text{양도가액}(250) = 50^{17)}$$

이는 상기 회계처리상 임가매수차익(수익)의 금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손금산입) 합병매수차익	50(△유보)*
(익금산입) 합병매수차익	10(유보)**

* 기업회계상 임가매수차익(수익) 50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 2011년(12월)분($50 \times 12\text{월}/60\text{월} = 10$)을 분할익금산입하기 위한 것이다.

(2) 합병매수차손의 경우

A법인은 2011년 1월 1일 B법인을 비적격합병형태로 흡수합병하고 B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시가 350, 액면가액 40)을 지급하였다. B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B법인 재무상태표

자 산			부채 및 자본	
자 산	150		부 채	50
(시 가	350)		자 본 금	60
			잉 여 금	40

이때 B법인은 세무처리상 양도손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산입).

$$\text{양도손익} = 350(\text{양도가액}) - 100(\text{세무상 순자산}) = 250$$

- 17) 합병매수차익 50과 양도차익 150을 합한 금액 200은 종전의 합병평가차액(순자산 시가 300 - 순자산 장부가액 100 = 200) 또는 현행 자산조정계정과 동일한 금액이다.

그리고 A법인은 기업회계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취득가액법).

(차) 자 산	350	(대) 부 채	50
영 업 권	50	자 본 금	40
		주식발행초과금	310

합병매수차손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text{합병매수차손} = \text{순자산 시가}(300) - \text{양도가액}(350) = 50$$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영업권의 자산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합병매수차손	10(기타)*
---------------	---------

* 5년간 분할손금산입 대상액(50)중 1년분이다.

② 영업권의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자 산	50(△유보*)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	50(기타)

* 감가상각 또는 자산의 매각시 반대로 세무조정 해야 한다.

이 경우는 양쪽 부인을 통해 당해연도에는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한 다음 손금산입 부분은 감가상각 또는 자산의 매각시 익금산입 한다. 물론 상기 영업권은 자산성 여부에 불구하고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한다.

3. 개정 합병세제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현행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제도와 합은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범위액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서 적극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개정 합병세제에 의하면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감

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가. 감가상각의 본질

(1) 기업회계의 관점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이란 “상각대상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고정자산이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기간인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통상 정액법 또는 정율법)으로 배분한 다음 동 배분액을 내용연수기간 동안인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기간에 수익과 대응¹⁸⁾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절차”라고 정의된다.¹⁹⁾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가의 비용화과정이라고 정의된다.

상기 정의에 의하면 감가상각은 기간손익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형자산이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비용화해야 한다는 점과 동 비용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의 관점

법인세법에서의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와 접근방법이 상이한데 그 이유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목적은 과세소득을 산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장부상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며²⁰⁾ 법인이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지 여부, 세법상의 한도액내에서 얼마만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지 그리고 어느 회계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지²¹⁾에 대해 법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상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²²⁾

18) 수익창출에 기여한 비용을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동일한 회계연도에 인식하는 원칙을 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19) 미국 AICPA의 ARB에 의하면 ‘감가상각이란 유형고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배분의 과정이지 평가의 과정은 아니다’고 하였다(AICPA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Restatement and Revision of Accounting Research"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New York : AICPA, 1953. ch 9 section C. para 5)

20) 따라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1) 따라서 반드시 내용연수기간(수익창출에 기여한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2) 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할 수 있는바, 이는 감사의견의 제한사유가 될 뿐이다.

나.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세무조정방법과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1)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세무조정방법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양 회계의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의 취득가액법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세무조정해야 한다. 본 규정은 피합병법인에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과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합병법인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때 시가에서 차감하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유보사항)을 승계하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에 Δ 유보(손금산입)는 더하고 유보(익금산입)는 뺀 가액을 자산조정계정 계산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피합병법인의 유보가 자산조정계산에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 자산조정계정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구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①).

(가)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가산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비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2)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상기 규정에 의하면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계상된 감가상각자산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되어야 하나 기업회계상으로는 시가로 계상된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기업회계상 취득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기업회계상으로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장부가액

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면(지배·종속법인간 합병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이때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로서 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익금산입(유보)으로 부인하게 되나 0보다 작은 경우로서 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기업회계상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방식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해야 세무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법인세법 제23조의 결산조정제도의 원칙과 충돌하는바, 일종의 특례규정의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자산조정계정의 금액이 0보다 작다면 기업회계에서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의 감가상각비보다 작을 것이므로 결산조정제도에 의하면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손금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례규정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불인정제도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법인세법에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례라고 본다.

4. 비과세 기업합병 관련 미국의 입법 예

가. 비과세 합병요건

미국의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 IRC)에 의하면 합병(사실상의 합병 포함)이 비과세 기업구조조정(tax-free reorganization)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세제에 따라 과세방법이 정해지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산매각거래로 본다.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의 요건은 일반요건과 구조조정의 유형별 요건이 있으며 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²³⁾

(1) 일반요건

기업의 구조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의 일반요건은 판례법(case law)에 의한 요건(non-statutory requirement)과 성문법에 의한 요건(statutory requirement)이 있으며 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성문법에 의한 요건은 해당 합병 등이 기업구조조정의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을 요건으로 하며(IRC§354 & 361) 판례법에 의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이며 우리나라의 적격합병 요건과 거의 동일하다.

첫째, 사업목적(business purpose) 요건으로 해당 합병에 사업상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23) 이준규, 전게논문 257~258면 수정 재인용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면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지분의 연속성(continuity of interest) 요건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구조조정 직후 합병법인의 주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Treasury Regulation §1.368-1(b)& (c)). 이 경우 합병대가의 최소한 50% 정도가 합병법인의 주식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Revenue Procedure 77-37).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합병 후 처분하더라도 합병당시 처분할 의도가 없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Treasury Regulation §1.368-1(e)(6) ex.3).

셋째, 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 요건으로 영업활동의 계속성 또는 자산의 계속성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Treasury Regulation §1.368-1(b)&(d)). 영업활동의 계속성(business continuity)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합병법인이 합병 후 계속 유지해야 함을 말하며 자산의 계속성(asset continuity)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합병법인이 합병후 계속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업활동의 계속성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1/3을 합병후 계속 영위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Treasury Regulation §1.368-1(d)(5) ex.1).

(2) 법률상 합병과 사실상 합병의 유형별 요건

IRC에서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A”는 법률상 합병(statutory merger or consolidation)을 말하며 법률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포괄하여 합병법인에게 양도하고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분배한 후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면 유형 “A”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의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IRC§368(a)(1)(A)). 유형 “C” 기업구조조정은 사실상 합병(practical merger)을 말하며 IRC§368(a)(1)(C)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 비과세 합병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구조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상 합병과 사실상 합병의 세무상 처리는 동일하다. 주요 합병 당사자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²⁴⁾

(1) 합병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합병대가가 전부 주식 또는 유가증권이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대가에 주식 또는 유가증권 이외의 다른 자산(예 : 현금)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자산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면 해당 자산의 시가를 한도로 이익을 인식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아니한다(IRC§361) 그리고 합병법인에게 부채를 인계하는 것은 합병대가를 자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IRC§357(a)).

24) 이준규, 전계논문 259~260면 수정 재인용

(2)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합병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1032(a)).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산에 대한 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피합병법인이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IRC§362(b)).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상 잉여금(유보)등은 합병법인이 승계한다(IRC§381(a)).

5. 개정 합병세제와 기업회계와의 관계

가.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1994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상당부분을 기업회계의 원칙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향이 나타나자 1994년 말 기업회계가 법인세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법인세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뒤 1998년 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4년 이전수준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회계의 관행은 보충적인 효력만을 가진다(대법원92누2936, 1992.10.23).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표 1〉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관계

94년 개정이전 (양 회계 병존)	94년 개정이후 (기업회계 우선)	98년 개정(현재) (양 회계 병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가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 -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법인세법이 우선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름	법인세법에 규정된 6가지 이외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은 무조건 기업회계가 법인세법에 우선 - 법인세법에 손익의 귀속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기업회계가 우선한다는 별도의 조문으로 인하여 사실상 법인세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었음	94년 이전으로 복귀 - 다만 94년 이전과 다른 점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가능한 기업회계와 일치하도록 사전조정을 거쳐 입법화 하였다는 점이며 그 후에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25) 김진표, 1999.1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한국공인회계사회 월간공인회계사 21면 수정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입법론적으로는 현행 세무조정제도보다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으로 법인세법 집행단계에서 과세소득의 계산과 기업회계를 연결함은 좋은 제도가 아니다. 법인세법이 재무정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제적 사건의 내용이 같은 이상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든 법인세법상 법률효과는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제적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법인세법상 법률효과가 기업회계상 회계처리가 어떠했는가에 달려있게 한다면²⁶⁾ 납세의무자들이 기업회계의 불안정성을 악용하여 과세소득을 조작할 가능성이 생긴다. 동시에 이 과정은 과세소득을 조작하기 위해 재무정보를 왜곡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회계정보가 어떤 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기업회계의 규범내용에 국가가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이 기업회계를 받아들이면서 기업회계의 내용 가운데 법인세법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방식인 세무조정제도를 통해 기업회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기업회계기준이 바뀔 때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바꿀 수 없는 까닭에 기업회계의 독립성 훼손은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다. 법인세법이 기업회계를 간섭하게 되면 회계정보시장이 왜곡된다. 회계정보는 그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겨나는 경제재이고 어떤 정보가 얼마나 생겨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자유롭게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의 역할은 회계정보시장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 법인세법이 회계정보시장에 간섭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결국 법인세법이 회계정보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경제적 사건이 같은 이상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효과는 같도록 해야 한다.²⁷⁾

나.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제도의 한계와 양 회계의 충돌성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규범으로는 상법,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하는 세법,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이 세 가지 규범은 동일한 대상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면서도 각각 그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따라야 하는 기업은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이중 상법의 계산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없다.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에는 상충되는 내용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이는 양 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하므로 불가피하다. 그러나 회계분야의 통일성과 명료성 및 단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서 조세징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든가 과세의 공평·공공성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을 기업회계에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²⁸⁾

26) 후술하는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제도가 대표적이다.

27) 이창희, 2009, 『세법강의』, 박영사 765면

28) 이는 세무당국의 행정상의 이점과 납세자의 실무상의 편의를 중시하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제도로 인해 기업회계가 왜곡되고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기업회계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세무조정제도)은 기업회계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²⁹⁾

첫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회계는 채권자 및 주주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익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산출되도록 요청된다. 수익은 실현 또는 회수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비용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세법은 공평과세를 중시하므로 적정한 이익의 산정이 요청된다. 따라서 적정한 과세소득 산출을 위해서 일부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이익산출 방법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에서 산출된 이익을 기초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산출의 왜곡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업회계기준 적용의 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회계의 기본정신인 회계의 단순성·유연성 등을³⁰⁾ 그대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도 회계작성자에 따라 이익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부담이 달라지는 수평적 공평문제를 야기하며 유연성을 이용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기업회계와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가능성 문제가 야기된다. 과세소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한 세법에 규정된 과세기준과 과세요건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는 현행법 하에서는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유동적이고 원칙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에 일임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법인세법의 개정 없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및 해석의 변경으로³¹⁾ 법인세부담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어 과세권의 사적이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제도 중 일부는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가 왜곡된다는 역기준의 폐해문제도 제기되고 있다.³²⁾ 또한 세무조

은 기업회계와 세법의 분리방안을 주장한다(박정우·손상옥, 2001.1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71면, 최병성, 1999.9.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분리되어야 하는가?」, 상장, 6~7면, 이창희 전세서 765면).

29) 현행 법인세법구조하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이것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분리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근거가 된다).

3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종전의 Rule Base에서 Principle Base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회계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영역이 증가한다.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① 및 동령 제7조의3①에 의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포함)을 회계처리의 일반화된 규범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

32) 박정우·손상옥, 전제논문 63면.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이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는 현상인 역기준의

정을 위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의 사회적 부담 문제도 대두된다.

한편 위와 같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근본적인 문제이외에도 현행 세무조정제도에 의하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법인세법상의 조정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양 회계 사이에 충돌이 존재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로 인한 기업의 권리훼손 문제를 합병세제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제도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III. 개정 합병세제에서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 충돌성 문제

1. 개정 합병세제에 의해 해소된 문제

지금까지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의 자산승계원칙은 기업의 선택에 의해 장부가액 또는 시가에 의할 수 있었으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양 자간에 충돌성이 있었다. 그러나 적격합병시 장부가액 승계(비적격합병시는 시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이러한 충돌성은 해소되었다. 한편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양 회계간의 충돌성중 법인세법이 기업회계를 무력화시켰던 경우(역기준의 폐해)는 다음 세 가지이며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기업회계가 법인세법 규정을 무력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둘째, 장부가액법의 회계처리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입게 된다면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제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가. 법인세법에 의한 합병회계준칙 적용의 예외인정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된 1999년 3월 이전의 합병은 종전 「합병회계준칙」 제5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승계 가능하다. 타 법령에는 법인세법도 포함되었다) 취득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했었으므로³³⁾ 종전 합병회계준칙에 의한 공정가액 평가규정은 사문화되었던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업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 기업실무에서는 세무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상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회계이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입법된 세법상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에 준용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본래적인 정보제공기능을 저해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기업회계의 왜곡과 투명성 저해현상은 세무조정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이 된다.

33) 이 경우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자본차익(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되고 합병차익을 자본전입 하더라도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세수단으로

것이 사실이다. 즉 종전 합병회계준칙이 합병회계처리에 있어 장부가액법을 용인했던 것은 법인세법에 기인하는 바, 법인세법에 의해 기업회계의 합병회계처리기준이 무력화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나.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결손금 승계시 장부가액 승계 회계처리 강제화

한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했었다.³⁴⁾ 이때 기업회계의 취득가액법과 법인세법의 장부가액법의 차이를 해소시킬 세무조정수단이 없었으므로 기업들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해 합병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득불 법인세법에 따라 장부가액법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법인세법에 의해 기업회계의 합병회계처리기준이 무력화되었던 또 다른 사례로 지적된다. 이는 분할의 경우(구 법인세법 제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현행 46조의4로 이관되었다)도 동일하다.

다. 법인세법통칙에 의한 존속인적분할 회계처리시 장부가액승계 회계처리 강제화

법인세법기본통칙48-84-1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등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여³⁵⁾ 존속인적분할의 경우 적격분할요건에 추가하여 장부가액 승계요건 구비시 분할대가계산의 특례를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배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즉 기업회계에서 취득가액법을 적용할 경우(기업회계에서는 존속인적분할시 기존회사의 자본이 불균등감자되는 경우는 취득가액법으로 회계처리하고 균등감자 되는 경우는 장부가액법을 적용한다) 세무조정의 여지가 없었다.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해 기업회계의 분할회계처리기준이 무력화되었던 또 다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많이 활용되었었다. 그러나 199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구 법인법 §16 ① 2호 가목, 구 법인법 §12 ① 4호)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차익(취득가액법인지 장부가액법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은 취득가액법인 경우에 발생한다)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게 되었었다. 2010년7월1일부터는 자본차익 및 합병평가차익규정이 폐지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대체되었다.

34) 장부가액 승계조건은 세법개정시(2010.7.1) 폐지되었다.

35) 2009년말 종전 법인세법 제48조가 제46조의5로 이관되면서 적격인적분할시(분할법인 존속) 양도손익 과세이연 규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동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라. 기업회계에 의한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규정의 무력화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분할신설 법인등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승계함에 있어 장부가액법과 취득가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때 기업회계의 경우 존속인적분할의 경우로서 균등감자 되는 형태의 분할은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야 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분할차익과 분할평가차익의 특례규정은 특례인적분할의 경우로서 시가로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 시 구태여 법인세법상 자산의 시가승계를 채택할 실익이 없었다. 이는 기업회계가 법인세법을 무력화시킨 사례로서 이는 양자의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수단의 미비에 기인했다.

2. 개정 합병세제에서 새로 대두된 문제

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조정수단으로서의 자산조정계정의 문제점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세무상 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바,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격합병의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서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시가와 법인세법상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동 금액이 0보다 크다면 익금으로, 0보다 작다면 손금으로 세무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0보다 큰 자산조정계정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다시 익금에 산입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세무조정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최초의 자산조정계정 계상이나 추후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유보금액의 처리방법이 규정들 간에 상호 모순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과 제4항 자체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인세법에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과세이연수단으로서의 자산조정계정의 역할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회계와의 차이조정수단으로서의 자산조정계정의 역할을 무시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아래에서 자산조정계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세무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모호성

무엇보다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는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만일 이것이 세무상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서 규정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회계처리가 상이한 경우와 동일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자의 경우 기업회계에서 잉가매수차익을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전술한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익금산입액이 자산조정계정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둘째,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자산조정계정 잔액(0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을 익금산입한다는 규정과의 모순은 피할 수 없다.

셋째, 세법상의 기본원칙이라 할 명료성의 원칙을 위배한 규정이다. 무엇보다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다.

(2) 사후관리조건 위배시의 세무조정 규정과의 모순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상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경우 사후관리요건에 위배하였다면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의3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조건에 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의 ④). 이는 처음부터 비적격합병인 것으로 간주하여 피합병법인 단계의 양도차익과 합병법인단계의 합병매수차익을 합병법인에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동 규정은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면 시가와 장부가액(세무상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사후관리조건에 위배하여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유보)에 산입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면 적격합병시 최초의 자산조정계정 단계에서는 손금(Δ 유보)으로 세무조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조정계정에 대한 사후관리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초의 자산조정계정 계상시 소득처분은 Δ 유보로 해야 한다. 즉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유보)산입하려면(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④) 최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무조정은 손금(Δ 유보)이었어야 함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는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규정과 모순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규정간 충돌성

실무상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법을 적용할 것이므로 기업회계상의 시가와 법인세법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다면(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큼) 기업회계상의 자산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손금(Δ 유보)산입하고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기업회계에서 증가된 순자산을 익금산입(기타)³⁶⁾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손금(△유보)금액인 자산조정계정이 사후관리조건 위배시의 익금산입요구에 대비할 수 있을 뿐아니라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차이를 해소시켜주는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클 경우 익금산입 하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과 모순된다.

(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없는 경우의 규정간 충돌성

기업회계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장부가액법을 적용한다면(이는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된다. 그러나 지배·종속법인간의 합병은 장부가액법을 적용해야 한다)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명치 않다. 먼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회계처리가 일치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회계처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자산조정계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무조정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회계처리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자산조정계정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은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다면 시가와 장부가액(세무상 가액)과의 차액인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에 산입(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도록 한 취지는 사후관리 조건 위배시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 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회계처리가 일치하는 경우 만일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손금(△유보)과 익금(기타)으로 동시에 세무조정 해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0보다 큰 자산조정계정금액을 익금산입 하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0보다 큰 자산조정계정금액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의 규정과 모순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3) 자산조정계정의 기능과 합병법인의 자산승계가액 규정의 모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조정계정의 기능에 대한 오해 및 규정들간의 충돌성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자산조정계정은 적격합병시에 피합병법인은 합병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면서도 합병법인은 이를 시가로 계상하도록 한 결과 추후 감가상각시 혹은 합병자산 처분시에 합병법인의 손금이 과소계상되거나 익금이 과대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계정이라는 견해가 있다.³⁷⁾ 그러나 자산조정계정의 기능은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처음부

36) 영업이익차익을 이익으로 계상했다면 동 금액을 빼고 익금산입하게 되므로 영업이익차익이 자동적으로 익금불산입 되게 된다.

37) 황남석, 이준규, 2010,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16권 제

터 비적격합병인 것으로 간주하여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이보다 큰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되 합병매수손익부분을 분할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산조정계정의 취지는 피합병법인의 합병손익과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을 과세이연시키기 위한 것이고 합병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인 것이며 취득가액법을 적용하는 기업회계와 장부가액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따라³⁸⁾ 시가로 계상한 자산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합병법인 자산의 시가계상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양도규정뿐 아니라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는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3호의 규정과도 모순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를 무리하게 법인세법과 연관시키려 했거나 자산조정계정의 기능 중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조정기능을 소홀히 취급한데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기업회계를 고려하지 않은 법인세법상 합병매수손익 규정의 문제점

(1) 기업회계상 합병매수손익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가) 불균등합병의 경우 회계처리

합병매수손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적격합병 또는 비적격합병 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불균등합병의 경우, 즉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중 일방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정상적인 합병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합병한다면 주식을 적게 발행하게 되므로 즉 잉가(저가)로 매수한 것이 되어 합병매수차익(회계상으로는 잉가매수차익, 종전 부의 영업권)이 발생할 것이고 정상적인 합병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합병한다면 고가로 매수한 것이 되어 합병매수차손(회계상으로는 영업권)이 발생할 것이다.

(나) 균등합병의 경우 회계처리

균등합병의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하더라도 적격합병 또는 비적격합병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상으로는 합병매수손익(회계상으로는 영업권 또는 잉가매수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³⁹⁾ 왜냐하면 합병비율 산정과정에서 상장법인이 포함된 합병의 경우 상장법인은 기준주가,

3호 66쪽. 동 논문에서는 자산조정계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84면) 이는 자산조정계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8) 국제회계기준의 취득가액법 회계처리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원용하려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전계 논문 70쪽).

39) 분할의 경우는 분할매수손익이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과 같은 자본거래로 인식되므로

비상장법인은 회계법인 평가액이 적용되고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액은 자산가치만이 아닌 수익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동 합병비율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행해야 할 주식수가 결정되므로 주식수에 합병등기일 시점의 합병법인의 주가(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법인의 주가를 평가해야 하는데 상장법인은 동 일자의 주가로 평가해야 하며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를 곱한 금액이 합병등기일 시점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금액(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을 하더라도 기업회계상으로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손익 과세이연의 의미

적격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면 합병법인에서 승계하는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 되고 합병법인의 양도가액도 순자산가액이 되므로 세무회계상으로는 상기 합병매수차익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때 적격합병시 기업회계상으로는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나 세무회계상으로는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세무회계상 합병매수차익이 비과세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세 특례배제 사유발생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합병매수손익은 과세 특례배제사유 발생시 처음부터 비적격합병이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분할과세된다.

(라) 적격합병시의 세무상 합병매수손익 미발생과 세무조정

비적격합병의 경우는 세무상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5년간 분할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는 기업회계상으로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한다하더라도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양도가액(주식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합병법인 단계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하고(법인세법 제44조의3①, 동시행령 제72조②3호) 양도가액도 순자산가액으로 해야 하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①1호) 세무상으로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2)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 규정 미비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격합병이면서 균등한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회계상으로는 불가피하게 합병매수손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때 적격합병시 세무회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업회계와의 차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병에서와 같은 세무조정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이연 된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경우에 대한 합병매수손익 관련 규정이 없다. 이는 적격합병시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둘째, 적격합병시 합병법인 단계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하고(법인세법 제44조의3①, 동령 제72조②3호)⁴⁰⁾ 양도가액도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①1호) 세무상으로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기업회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생한다고 봐야하는 합병매수손익에 대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⁴¹⁾ 현행 법인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적격합병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기업회계상의 합병매수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⁴²⁾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준중의 원칙에 의거 합병매수차익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일시에 익금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 경우 5년간 분할 익금산입 되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비해 더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둘째, 적격합병시 세무상 합병매수손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양도가액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양도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고 하였을 뿐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 계산에 이를 명백하게 원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념규정일 뿐이어서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 계산식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동금액이 0보다 크면 합병매수차익이 되고 0보다 작으면 합병매수차손이 된다.

$$\text{합병매수손익} = \text{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액}(\text{㉠}) - \text{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text{㉡})$$

이때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40) 법인세법 제44조의 제1항 및 동시행령 제72조 제2항 3호는 자산의 승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부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41) 황남석, 이준규, 2010,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16권 제3호 82쪽

42) 2010년 말 법인세법 제44조의 2의 제목이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적격합병의 경우에도 합병매수손익에 대해 5년 분할익금 또는 분할손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었다(이는 분할에 관해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46조의 2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4조의3①). 한편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㉔)은 법인세법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해석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의미한다.⁴³⁾ 이 경우 동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법인세법 제44조①1호, 동령 제80조①1호).

$$\text{순자산 장부가액} = \text{자산의 장부가액} - \text{부채의 장부가액} + \text{법인세환급액}$$

동 금액은 개념상 상기 순자산 가액(㉔)과 상이하며 양자가 항상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시행령 80조 제1항 1호에서의 순자산 장부가액에는 세무상 유보와 법인세환급액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개정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단계에서의 양도손익과 합병법인 단계에서의 합병매수손익은 과세특례 배제사유 발생시까지 과세이연 되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은 합병시점에서 과세이연 시켰다가 과세특례 배제사유 발생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방법에 준하여 합병매수손익을 분할익금 또는 분할손금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개정 합병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온 문제

－ 외감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제도 무력화의 경우

가.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제도의 취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법인세법은 결산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결산조정제도를 적용한다함은 법인이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지 여부, 세법상의 한도액내에서 얼마만큼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지 그리고 어느 회계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지(반드시 내용연수기간동안에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에 대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함을 의미한다. 즉 법인세법상으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절세목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내에서 손금산입 여부와 금액 그리고 손금산입시기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셈이다. 감가상각비등 추정항목에 대해 법인세법이 결산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⁴⁴⁾

43) 이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1호에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 부터 받은 양도가액’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과 동일한 의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법인세신고시에만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면 주주나 은행등으로부터 기업회계상의 경영실적을 우월하게 평가받기 위하여 회계장부에는 비용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크게 하는 반면에 법인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신고시에만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업회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⁵⁾

둘째, 상기와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이익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보수주의와도 어긋난다.⁴⁶⁾

셋째, 세무회계에서는 회사의 손금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은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손금을 인정해 줌으로써 국고감소를 수반하면서 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줄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⁴⁷⁾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주로 비외부감사법인들이 해당된다)결손이 발생한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후속연도로 감가상각을 이연시키고 있다. 결손상황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불필요하게 결손금액만 증가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제도 하에서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조세정책으로 간주된다.

나.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제도의 문제점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제도에 의하면 외부감사 적용대상 법인들은 사실상 감가상각 결산조정이 강제되고 있어 비외부감사대상업체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외부감사 적용대상 법인들은 외부감사를 의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정확하게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여부, 금액 또는 회계처리시기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인세법상의 조치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정당한 조세혜택을 향유할 길이 없어 비외부감사법인들과 과세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 즉 외부감사 적용대상 법인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하므로 법인세법의 취지대로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내에서 손금산입 여부와 금액 그리고 손금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외부감사대상법인들의 경우 결산조정제도의 취지대로라면 감가상각을 제대로 실시하여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보다 감가상각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감가상각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을 택할

44) 육윤복·박정우·신용립, 2010, 『법인세법』, 경영과 회계, 42면

45) 세법이 기업회계에 간섭하는 셈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부감사기업들은 감가상각비계상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왜곡과 무관하다.

46) 상동

47)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신고조정이나 자본항목 또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처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후술하는 자산조정계정 계상시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통한 신고조정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비외부감사대상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만일 동 외부감사대상법인들이 법인세법의 취지대로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감가상각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감사의견의 제한사유가 된다. 이는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간의 차이해소 수단인 세무조정 제도가 외부감사 적용대상 법인들의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외부감사 적용대상 법인들은 기업회계에 의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결산조정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외부감사 적용대상 법인들은 법인세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결산조정제도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다.

둘째,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해야 세무상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산조정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기업회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기업회계의 왜곡에 대한 우려나 기업회계상의 보수주의 차원에서 결산조정제도를 채택한 것이라면 더욱 더 정부가 기업회계에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IV. 개정 합병세제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 해소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정된 합병세제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에 충돌성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법인세법의 합병관련 규정시 법인세법 자체의 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회계와의 조화를 소홀히 한데 이유가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간접법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제도의 근본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사실상 직접법을 통해 과세소득을 산출하려는 것으로서 세무조정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사전적으로(ex ante) 양자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규정이 제정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장치 마련(예 :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쟁점사안의 사전적인 조정·협의)이 필요하다.⁴⁸⁾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자산조정계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자산조정계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인세법 규정들간의 충돌성은 법인세법에서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과세이연방법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자산조정계정의 역할을 간과한데 있다. 따라서 자산조정계정이 과세이연의 합리화에 기여하면서 기업회

48) 박정우·정래용, 2004.6.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66면, 권성수, 2002.3,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한국회계연구원 KAI Forum

계와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 세무조정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조정계정의 개념 명확화

법인세법은 자산조정에 대해 개념을 규정한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라는 의미는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즉 일종의 비망기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산조정계정 계상의 입법취지는 자산조정계정에 해당되는 금액(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을 합병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자산의 감가상각 및 자산의 양도 시까지 과세를 이연시켜 주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과세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⁴⁹⁾ 이는 일반적으로 과세이연을 하면서 예컨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조정계정은 해당자산의 평가계정인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수단으로 일시상각충당금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당해 용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구법령 제80조4항내지 6항)는 견해가 있다.⁵⁰⁾ 그러나 종전의 일시상각충당금등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종전에는 장부가액 승계 또는 시가승계가 선택가능 했으나 개정 후에는 적격합병시 장부가액 승계로 일원화됨)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이라는 점, 자산조정계정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과세이연수단이라는 점, 구체적인 과세이연방식이나 사후관리방식이 자산조정계정은 합병평가차익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종전에는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으로 하되 일시상각충당금등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개정법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하여 익금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용어를 바꾼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정계정의 정의를 규정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의 본문내용을 구체화하여 세무조정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2) 자산조정계정 세무조정방법의 구체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의 취지는 적격합병의 경우 세무회계에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 금액이 0보다 크거나 작다면 과세이연을 위해서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여 세무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의 내용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와의 차이 조정과정에서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관련 규정들 간에 모순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49) 김천웅, 2011, “합병등 구조조정관련 세제의 문제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자, 83면

50) 김성균, 2010,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세제 관련 검토』, 중앙법학 제12집제3호 459, 466면

의4 제1항 본문 전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표 2〉 자산조정계정 세무조정 세법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밑줄 삭제) 시가에서 ...계상해야 한다. 이때 기업회계상 계상된 자산가액(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과의 차액을 익금(기업회계의 금액이 더 작은 경우를 말한다) 또는 손금(기업회계의 금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으로 계상하되 소득처분은 유보로 한다. ⁵¹⁾ 다만 기업회계상 계상된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한다)과의 차액이 0일 경우는 장부가액과 법인세법 제44조의 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과 익금에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되 소득처분은 각각 유보 및 기타로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한편 상기 개선방안에 따른 세무조정방법에 의하면 자산조정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세무상 자산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 즉 손금산입(△유보)을 계상함과 동시에 기업회계상 순자산 증가(예 : 주식발행초과금)에 따른 익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이는 자산조정계정에 해당되는 금액(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을 합병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자산의 감가상각 및 자산의 양도시까지 과세를 이연시키는 방법인바, 동시조정을 통해 합병시점에는 과세소득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⁵²⁾ 이때 순자산 증가(예 : 주식발행초과금)에 따른 익금산입(기타) 세무조정의 경우 이것이 비록 동시조정의 방편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서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 세무조정에 대하여 다시 익금불산입(기타)해야 한다면 합병시점에 과세소득이 증가되지 않

51)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52) 이는 건물에 대한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로 동시조정하고 감가상각이나 매각시 익금산입(유보)로 처리하는 것과는 성격이 구분된다. 익금산입(기타)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익금산입이기 때문이다.

도록 하는 동시조정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고 오히려 손금산입(△ 유보)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과정에 발생하는 순자산증가시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익금항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합병매수손익의 문제점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격합병의 경우에 발생하는 기업회계상의 합병매수손익에 대해 법인세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로 보인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에 대한 배려부족의 측면도 있다. 적격합병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인세법은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세무조정함에 있어 적격합병의 경우에 발생하는 기업회계상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손익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마찬가지로 과세이연 됨을 법인세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법인세법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의거 기업회계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 또는 법인세법상의 순자산증가설에 의거 합병매수차익의 경우 전액을 익금에 반영해야 하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격합병시의 기업회계상 합병매수손익은 과세특례 배제사유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 시키는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합병매수손익 세무처리 세법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44조의3(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제44조의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기업회계상의 합병매수손익에 대해 제44조의3 제1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한다. ③ 현행 2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3. 외감법 적용대상법인의 감가상각 결산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외감법 적용대상법인의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외감법 적용대상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동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제도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감법 적용대상법인들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금액 그리고 손금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감사기업과 비외부감사기업들간의 과세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즉 외부감사기업에 대해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⁵³⁾

먼저 강제신고조정의 방식인데, 기업은 과세관청에 신고, 승인 받은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임의신고조정의 방식인데 이 경우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범위액에 미달할 경우 기업의 의사에 따라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해서는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를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일본의 경우도 상장기업·대기업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제도의 폐지여부를 논의하고 있다.⁵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 조사기업 중 41.4%가 감가상각비를 전면적으로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⁵⁵⁾

V. 결 론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고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현행 세무조정제도는 기업회계의 왜곡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외에도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법인세법상의 조정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양회계 사이의 충돌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다.

법인세법상의 합병제도 그리고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가상각비제도가 양자간의 충돌이 있어 온 대표적인 분야인데 합병시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승계기준으로 장부가액법과 취득가액법을

53) 한국세정신문, 2010.5.31, “K-IFRS 각 세법령과 엇박자”

54) 한국세정신문, 2010.7.22, “IFRS 도입 첫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해야”

55) 한국세정신문, 2010.8.9, “기업 56% IFRS 도입으로 법인세부담 는다”

선택하여 적용하게 했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제 합병시 합병평가차익 대신에 자산조정계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승계 기준으로 적격합병시는 장부가액법으로, 비적격합병시는 취득가액법으로 명확해졌고 양자의 차이로 인해 야기됐었던 여러 문제점들 예컨대 기업회계로 인해 법인세법이 무력화된다는지 법인세법으로 인해 기업회계가 무력화되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해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합병관련 법인세법에 의하면(2010.7.1시행) 신설된 자산조정계정 및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양자의 충돌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된다. 그리고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이 강제되어 비외부감사대상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양자의 충돌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편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의 세무조정과정에서 0보다 작은 자산조정계정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부분은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현행 법인세법 제23조와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특례규정의 성격이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에 신고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자의 충돌성으로 인한 기업의 권리훼손 문제를 합병제도나 감가상각제도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상호 충돌성을 해소하는 법인세법개정이 요구된다.

먼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고 작은 경우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조건 위배시 합병법인이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0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을 익금(유보)산입하도록 한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④)과도 모순된다. 사후관리 조건 위배시 0보다 큰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하려면 최초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무조정은 0보다 큰 자산조정계정에 대해 손금(△유보)으로 조정하도록 했어야 함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과세이연에 치중한 나머지 자산조정계정을 통한 기업회계와의 차이조정을 소홀히 한데 기인한다.

둘째, 합병매수손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과세특례배제 사유시까지 과세이연 해야 하는 것으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적격합병이면서 균등한 합병비율에 의해 합병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회계상은 불가피하게 합병매수손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은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된 합병매수손익에 대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현행 법인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적격합병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에서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익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일시에 익금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는 5년간 분할 익금산입되는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비해 더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 자체의 논리에 집착

한데 기인한다.

셋째,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업계로부터 꾸준히 요청되어온 사항인 바,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사실상의 강제 결산조정은 비외부감사대상법인과 형평성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기업회계에 의해 법인세법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로서 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익금산입(유보)으로 부인하게 되나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작은 경우로서 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Δ 유보)으로 세무조정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기업회계상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방식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제도 도입의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권리훼손이 야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는 후속된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정우 · 정래용, 2011.3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주)영화조세통람
- 육윤복 · 박정우 · 신용립, 2010, 『법인세법』, 경영과 회계
- 이철재, 2010, 『세무회계연습 I』, 도서출판 탐진
- 권성수, 2002.3,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한국회계연구원 KAI Forum
- 김길성 · 오문석, 2003.3, 「기업합병과세 개선을 위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권 제2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김성균, 2010,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세제 관련 검토」,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 김진수 · 이준규, 2007, 「기업인수 · 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Vol 130,
- 김진표, 1999.1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한국공인회계사회 월간공인회계사
- 김천웅, 2011, “합병등 구조조정관련 세제의 문제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자
- 박정우 · 손상옥, 2001.1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제2권 제1호
- 박정우 · 정래용, 2004.6. 「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서광석, 2009.9, 「회사의 분할회계와 과세체계」,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기업경영학회
- 서광석, 2010,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기원 · 박철용, 2001,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연구위원회
- 신찬수, 1994,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해소를 위한 제언」, 상장현 제29호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 이만우 · 정석우 · 정규언, 2003, 「회계관련 법규의 조화방안 :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4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 이준규, 2009.8, 「사실상 합병에 대한 적정과세방안」,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 이우택, 1997,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회계학연구
- 정광은, 2009,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걸, 2006,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현황분석을 통한 합병회계의 개선방안」, 월간공인회계사
- 천승희 2010,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성, 1999.9,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분리되어야 하는가?」, 상장
- 황남석 · 이준규, 2010,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16권 제3호

A Study on the Inconsistency between Corporate Accounting and Corporate Tax Law in the Revised Taxation upon Business Acquisition

Rae Yong Jung*

— <Abstract> —

Although the current book-tax conformity rules that allow calculating taxable income through tax adjustment based on net income resulted from corporate accounting has caused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the distortion of corporate accounting, there are some unavoidable reasons for continuing this practice.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corporate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at cannot be covered by the present tax adjustment system or areas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two accounting methods.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consistency between corporate accounting and tax adjustment focusing on the revised taxation on merger along with issues related to the declaration adjustment of depreciation expenses. The revised corporate tax law has caused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inconsistency among relevant laws or the absence of relevant articles related to the newly added asset adjustment account and the tax adjustment of profit and loss resulted from a merger and acquisition. Also, the revised law demands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to conduct tax adjustment in book-closing, causing an issue of fairness when compared to those companies that are not subject to external audit ; therefore, when an eligible merger occurs, offsetting the portion of depreciation expenses, which belongs to asset adjustment account, during tax adjustment of asset adjustment account could be a crucial reason for allowing the declaration adjustment of depreciation expense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content of the first clause of the fourth of Article 8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corporate tax law, which requests to include asset adjustment account of which value is bigger than 0 into profit, contradicts the fourth clause of the fourth of Article 80 of the same enforcement ordinance that demands the inclusion of asset adjustment account of which value is bigger than 0 into profit if regulations of post management are breached. It is because asset adjustment account had to be deductible as necessary expenses originally, if it has to be included into earnings when regulations of post management are breached. This contradiction has occurred as the adjustment of the differences from corporate accounting through asset adjustment account has been ignored while too focusing on tax deferral by means of asset adjustment account.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Secondly, any profit or loss incurred by an eligible merger and acquisition is required to be included into profit at once based on increased net asset theory since there is no applicable regulation in corporate tax law. However, this is unreasonable because this practice is more disadvantageous than the case of ineligible merger which requires 5 year split inclusion into profit. It is likely that the revised corporate tax law has failed to notice that profit or loss caused by an eligible merger and acquisition can occur because the logic of corporate tax law itself has been emphasized too much without fully considering corporate accounting.

Thirdly, the de facto enforced request for adjustment in book—closing of depreciation expenses of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is undesirable in terms of fairness matter, comparing to companies that are not subject to external audit. Thi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typical cases that corporate tax accounting is incapacitated by corporate accounting. When asset adjustment account is not greater than 0 in case of an eligible merger, the same amount of depreciation expenses as the asset adjustment account is considered to be deductible (Δ reserve) upon tax adjustment ; this can be a potent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eclaration adjustment of depreciation expenses.

<Key words> taxation upon business acquisition, inconsistency, eligible merger, asset adjustment account, profit or loss caused by a merger and acquisition, depreciation expenses